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사업 연도 | 2025.01.01 ~ 2025.12.31 |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| 법인명 | 주식회사 엔알비 |
|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433-87-01796 |

| 구분 | ① 요건 | ② 검토내용 | | | ③ 적합 여부 | ④ 적정 여부 | |
|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중 기 업 | ⑩ 사업요건 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| 구분 | 기준경비율코드 | 사업수입금액 | (17) 적합 (Y) | (26) | |
| | | 업태별 | | | | | |
| | | (01) (부동산업)업 | (04) 701203 | (07) 59,481,544,678 | | | |
| | | (02) ()업 | (05) | (08) | | | |
| | | (03) 그밖의 사업 | (06) | (09) | | | |
| | 계 | | 59,481,544,678 | | 부적합 (N) | | |
| | ⑪ 규모요건 ○아래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'평균매출액등' 은 '매출액' 으로 봄)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| 가. 매출액 - 당 회사 (10) (594.8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11) (400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1,758.6 억원) | (18) 적합 (Y) | 적 (Y) | | | |
| | ⑫ 독립성요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기업일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(⑩의 ① 기준) 이내일 것 | (19) 적합 (Y) | 부적합 (N) | 부 (N) | | |
| | ⑬ 유예기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|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2023 년) | (20) 적합 (Y) | 부적합 (N) | | | |
| 소 | 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| 중소기업 업종(⑩) 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⑫) 을 충족하는지 여부 | (21) 적합 (Y) (N) | (27) | | | |
| 기 업 | ⑮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('평균매출액등' 은 '매출액' 으로 본다) 이내일 것 | ○ 매출액 - 당 회사 (14) (594.8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(15) (40.0 억원) 이하 | (22) (Y) 적합 (N) | (27) 적 (Y) | 부 (N) | | |

| 구분 | ①요건 | ②검토내용 | ③적합여부 | ④적정여부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중 견 기 업 | ⑩⑦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|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⑩⑧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| (23) (Y) (N) | (28) | | | | | | | |
| | ⑩⑩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 | (24) (Y) (N) | 적 (Y) | | | | | | | |
| | ⑩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구 조세특례제한법)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기목2) 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 |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55 667 1201 772"> <thead> <tr> <th>직전 3년</th> <th>직전 2년</th> <th>직전 1년</th> <th>평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80.0 억원</td> <td>515.3 억원</td> <td>596.1 억원</td> <td>430.5 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직전 3년 | 직전 2년 | 직전 1년 | 평균 | 180.0 억원 | 515.3 억원 | 596.1 억원 | 430.5 억원 | (25) (Y) (N) |
| 직전 3년 | 직전 2년 | 직전 1년 | 평균 | | | | | | | | |
| 180.0 억원 | 515.3 억원 | 596.1 억원 | 430.5 억원 | | | | | | | | |